

대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다27491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다274912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1나12049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1. 1. 13 선고 2020가소10780 판결

전문

원고, 상고인 A

피고(선정당사자), 피상고인

1. B

피고, 피상고인 2. C

3. D

판결선고 2022. 12. 15.

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1나12049 판결

주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.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조재연, 대법관 민유숙, 주 심 대법관 이동원, 대법관 천대엽
별지